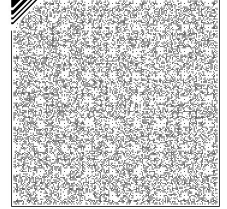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통일조정 대상업체 대표 귀하
(경유)

제목 프레드니카르베이트 단일제(피부액제, 피부연고제, 피부크림제, 피부로션제) 허가
사항 변경 명령(통일조정)

1. 관련 : 허가총괄담당관-7125호('22.12.20.)
2. 우리 처(허가총괄담당관)는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품목 중 '프레드니카르베이트 단일제(피부액제, 피부연고제, 피부크림제, 피부로션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프레드니카르베이트 단일제(피부액제, 피부연고제, 피부크림제, 피부로션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23.05.22.자로 변경토록 명령 하니, 당해 업체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명령 사항을 업체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게재할 것
(단,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종이 허가증인 경우

- 해당품목 품목허가증(또는 신고필증) 원본 뒷면(변경 및 처분사항 등)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할 것

변경 및 처분사항 등		
년 월 일	내 용	
2023.05.22. ↑ 변경일자	사용상의 주의사항 ↑ 변경명령 항목 기재	(허가총괄담당관- 호, 2023.02.22.) ↑ 변경명령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 참고 :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관련: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

- 품목허가증(또는 신고필증) 원본에 변경 명령한 내용(통일조정안)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관리할 것

다. 전자 허가증인 경우,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확인할 것

4. 동 기간 내에 상기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 ’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프레드니카르베이트 단일제(피부액제, 피부연고제, 피부크림제, 피부로션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프레드니카르베이트 단일제(피부액제, 피부연고제, 피부크림제, 피부로션제)
통일조정 변경대비표
3. 프레드니카르베이트 단일제(피부액제, 피부연고제, 피부크림제, 피부로션제)
통일조정.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심사원

김원희

사무관

이겨레

허가총괄담당관 전결 2023. 2. 22.
관 이수정

협조자

시행 허가총괄담당관-1055 (2023. 2. 2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312 팩스번호 043-719-2900 / kwh721@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